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66
----------	-----

2024. 9. 11.(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9월 4일

-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대상자인 도내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까지 추가하여 도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등 더 많은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확대(안 제5조)
 - (현행)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변경)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의 내용 중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난 해 1월,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도내 65세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까지 포함해 보다 많은 도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제적 치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도민의 의료복지 증진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장려정책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는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자격 및 대상자를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를 포함하도록 함.

- 이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수가 현행 455,923명에서 810,760명으로 확대되었음.

※ 대상자 확대 : (현행) 455,923명 → (개정안) 810,760명

현 행	개 정 안
① 65세 이상 노인(330,884명)	① 65세 이상 노인(330,884명)
② 기초생활수급자(47,061명)	② 기초생활수급자(47,061명)
③ 차상위계층(25,782명)	③ 차상위계층(25,782명)
④ 장애인(45,562명)	④ 장애인(45,562명)
⑤ 국가유공자(6,634명)	⑤ 국가유공자(6,634명)
	⑥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54,837명)

- 대상자의 확대는 충북도 내 질병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게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 용자지원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

- 특히,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는 저출생의 위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다만, 본 조례를 통한 지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중에서도 특히,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도지사가 합의하여 선정된 지원대상 질병* 에 대한 수술(시술)비용에 대한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자금 미상환금에 대한 보전비(1인당 대출한도 50~300만 원, 3년 무이자 상환)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해당 질병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대상자들이 느끼는 실효성이 감소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를 통해 지원 금액 및 대

상 질병 확대 등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수술 : 14개 수술(시술)

-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척추, 치아교정, 암 질환, 소화기(담낭·간·위·맹장)질환, 호흡기질환, 산부인과질환, 골절질환, 비뇨기질환, 안과질환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다만, 단순히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수술(시술) 질환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용자지원 신청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다자녀가구(2자녀 이상)</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810,760명
 - * 65세 이상 노인(330,884), 기초생활수급자(47,061), 차상위계층(25,782), 국가유공자(6,634), 장애인(45,562), (2자녀 이상)다자녀가구(354,837)
- 대상수술 : 14개 수술(시술)
 -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척추, 치아교정, 암 질환, 소화기(담낭·간·위·맹장)질환, 호흡기질환, 산부인과질환, 골절질환, 비뇨기질환, 안과 질환
- 의료기관 : 242개소
- 채용규모 : 125억원(농협 정책자금, 25억×5년) * 道 채무보증
- 도비소요액 : 25억원
- 대출한도 : 1인 50~300만원 / 3년간 무이자 상환
- 사업량 : 연 830명^{최소} ~ 5,000명^{최대}
- 사업내용 :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지원 대상자의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 금융기관 대출자금 미상환금에 대한 보전비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내용) 및 제11조(채무보증)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준 : '23~'24년 현재 예산 및 연체 현황 기초
- 추계기간 : 향후 5년(2024년~2028년)

나. 추계 결과

○ 산출금액

- (세입) 14백만원 ※ '23~'24년 발생 미상환금
- (세출) 2,444백만원 [미상환금 등 1,280 / 이차보전금 1,164]

○ 산출과정 = ('24) 388백만원 [(미상환금^①+ 연체이자^②) + 이차보전금^③]

- ① 미상환금 보전 : 250,000천원(미상환율 10%)
- ② 연체이자 등 보전 : 6,870천원(지연이자+연체이자)
- ③ 이차보전금 : 132,500천원(이율 5.3%)

○ 재원조달 방법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14	2	3	3	3	3
미상환금 환수	14	2	3	3	3	3
세 출	2,444	388	478	526	526	526
의료비 미상환금 지원	1,280	256	256	256	256	256
의료비 이차보전금	1,164	132	222	270	270	270

※ 상환기간(3년)에 따른 이차보전금 누계 반영